

프랑스의 스포츠 산업 : 일과 고용

Jean Louis Gouju (프랑스 스포츠고용연구소 사무총장)

■ 머리말

스포츠는 중요한 사회 현상이며, 전 세계적으로 가장 잘 알려진 활동 중의 하나이다. 스포츠는 스포츠 클럽 내부에 벌어지는 경쟁, 프로 선수들이 제공하는 화려한 볼거리, 여가나 건강을 위해 즐기는 스포츠 레저활동, 사회적 통합이라는 목적을 위해 진행되는 체육 등 일련의 활동 과 다양한 서비스로 구성된다. 스포츠 산업은 매우 역동적이며 복잡한 성격을 지니며, 프랑스의 스포츠 연맹은 스포츠 전문가들의 참여로 인해 지속적으로 전문화되고 있지만, 이러한 상황에 빠르게 적응해 온 자원봉사자 출신의 지도자들이 관리해 왔다. 따라서 스포츠 산업에서 고용을 언급하기 위해서는 우선 여기서 사용되는 개념과 방향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있어야 한다. 따라서 우리는 프랑스와 유럽의 일부 사례를 이용하여 스포츠 산업을 정의해 보고자 한다.

■ ‘스포츠 산업’ 시스템의 유럽식 정의

유럽에서는 유럽표준산업분류(NACE 1997, 2008년 개정)¹⁾에 따라 스포츠를 몇 가지 다른 경

1) Le Roux, N. ; Camy, J.(1997), Nomenclature Européenne des Activités économiques sportives et en relation avec le sport, Barcelona, Edition du REISSIEOSE.

제활동으로 구분한다.

스포츠 산업은 스포츠 실행의 전 단계에 제시되는 경제활동(스포츠 선행활동)과 스포츠 실행에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활동(스포츠 산업), 그리고 스포츠 실행에서 파생된 경제활동(스포츠 파생 활동)으로 구분된다. 이러한 구분이 인위적이기는 하지만 통계를 위해서 필요하다라는 점을 주지하도록 하자.

스포츠 선행활동

스포츠 시설의 건설, 스포츠 용품의 제조나 판매는 스포츠 실행에 직접적으로 연관된 서비스활동, 즉 시설이나 용품의 제공 및 실행 감독으로 제한한다.

스포츠 산업

이는 스포츠 실행에 직접 관련된 서비스활동, 즉 시설이나 용품의 제공, 실행의 감독 등 서비스활동에 제한된다. 피트니스, 야외활동(수상스포츠, 스키, 승마), 프로 스포츠, 아마추어 스포츠(클럽 및 연맹) 등 몇 가지 하위 부문으로 구분이 가능하다.

스포츠 파생활동

여기에는 의학, 물리치료, 스포츠 식이요법, 스포츠 저널리즘, 법적 조인 등, 주변적 활동이 포함된다. 우리는 학교 체육도 이 범주에 해당되는 것으로 간주한다. 국가별로 서로 다르게 구분짓겠지만 언제나 스포츠 관련 활동으로 간주한다.

■ 스포츠의 고용 시스템

아래 각각의 활동 범주는 인력자원을 필요로 한다. 스포츠 부문에서 이들 범주를 특징짓는 것

은 매우 복잡한 일이다.

- 중앙 부문의 임무는 쉽게 인식되지만 이와 연관된 스포츠 관련 일자리는 산업계 전체 부문으로 넓게 퍼져 있다(예 : 인명구조대원).
- 확보한 인력은 대부분 자발적인 봉사자인 경우가 많고, 그렇지 않은 경우라도 특수형태의 고용이 대부분이다(파트타임, 중복 고용, 독립근로자 등).
- 사용자가 기업인지 단체인지에 따라 매우 다르며, 기업인 경우 규모가 매우 작다.
- 동일한 활동에 대해 여러 다른 직급으로 이동이 가능하다(부감독, 총감독).

유럽 스포츠 고용 시스템에서 직업에는 두 가지 주요 카테고리가 존재한다.

스포츠 산업의 직업

- 프로선수, 제한된 숫자의 스포츠에서 활동
- 스포츠 진행을 직접적으로 감독하는 조정위원, 심판, 계시원 등의 관리
- 스포츠 활동을 특별한 대중(노인층, 장애인, 청년층 등)들을 위한 집단 활동의 수단으로 이용하는 스포츠 제작자
- 새로운 스포츠를 배우기를 원하거나, 기술 연마를 원하는 대중을 대상으로 하나 이상의 스포츠 활동을 가르치는 스포츠 강사
- 특정 스포츠 실행의 체계적인 제작을 준비하고 참여하는 스포츠 감독

스포츠 관련 산업의 직업

- 스포츠 조직이나 스포츠 관련 조직의 전문 매니저
- 스포츠 의사
- 스포츠 담당기자 및 스포츠 커뮤니케이션 전문가
- 스포츠 전문 물리치료사

- 스포츠 행사나 전문 스포츠맨의 대리인이나 홍보인
- 스포츠 용품 판매원
- 스포츠 시설 안내원
- 스포츠 시설 유지관리 직원

■ 프랑스 사례

상기 내용에 대한 프랑스의 사례를 언급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특수성을 고려해야 한다. 예를 들어 프랑스에서는 스포츠 감독(코치 및 감독)이라는 직업은 법의 규제를 받는다. 따라서 감독은 법적 한계 안에서 이러한 부문에서 활동하기 위해서 별도의 학위를 소지해야 한다(스포츠 감독 부문에서 직업을 정의하는 것은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스포츠 산업

통계적인 관점에서 우리는 스포츠 산업에서 직접적인 스포츠 감독과 관련된 구체적인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82,000명 정도로 추산할 수 있다(이 중 4,000명만 프로 선수이다). 우리는 스포츠 산업의 고용규모를 사용자 측면에서도 구분해 볼 수 있다. 스포츠 산업의 사용자들에게 고용된 근로자는 약 10만 명이며 이들 중 절반은 스포츠 활동, 즉 스포츠 감독에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다. 그러나 관련된 근로자들이 기업을 통하지 않고 스포츠에 직접 연관되어 있거나 스포츠 산업 이외의 기업에 고용되어 있는 경우도 많다. 어느 정도의 자치권을 지닌 지방자치단체나 여가활동이 가능하거나 관광 명소가 있는 공원, 승마학교를 그 예로 들 수 있다. 이러한 상황을 요약해 본다면 스포츠 산업의 스포츠 감독관련 고용은 약 52,000명이다. 그 외에 지역 공공서비스 내에 약 16,000명이 종사하며 스포츠와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는 부문에 약 14,000명이 종사한다. 이는 학교의 체육교사는 포함되지 않은 수치이다(35,000명).

이는 스포츠 산업에는 포함되어 있으나 행정 부문, 서비스 부문과 커뮤니케이션 또는 기타 스포츠 감독이 아닌 활동을 하는 근로자가 50,000명임을 고려할 때 스포츠 산업 전체는 약 10만 개

이상의 일자리를 제공한다고 추산할 수 있다. 이러한 수치는 프랑스 스포츠 산업의 일자리 규모가 독일의 스포츠 부문의 일자리 10만 5,000개와는 유사하지만 영국의 27만 개에는 훨씬 못 미친다(2007 CEP Sport, 미출판). 그러나 프랑스에서 스포츠 산업의 성장이 매우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1980년 4만 개에 불과하던 일자리 수가 이제 10만 개를 넘는다(2007 ONMAS, 미출판). 이러한 수치를 이해하기 위해서 법적인 구분에 따라 스포츠 산업의 구조를 이해해야 한다. 스포츠 산업에서 사용자로서의 스포츠 연맹이 25,000개가 있으며 유한회사 및 기타 무역회사가 약 3,000개, 기타 사용자 단체가 1,000개가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우리가 이러한 수치를 해석을 위한 기본 배경으로 인지한다면, 프랑스 스포츠 산업에서 최소한 총 26,000개의 사용자(단체)가 10만 명을 고용하고 있다고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현실은 훨씬 더 복잡하여 이외에도 다양한 형태의 비정규직이 고용되어 있으며, 약 35% 가량이 파트타임직에 고용되어 있다.

이 중심에 스포츠 감독 및 스포츠 훈련관련 직업과 프로선수가 포함된다.

프로 선수 : 4,000명									
스포츠 감독 : 86,000명									
프로선수 감독	경쟁 아마추어 스포츠 감독	레저·건강체조	해양 및 수상 활동	피트니스	골프	스키	승마	야외 스포츠	테니스
2,500명	13,500명	5,000명	10,000명	10,000명	8,000명	15,000명	6,000명	9,000명	7,000명

출처 : Vocasport report(2003), 2007년 ONMAS 개정.

스포츠관련 산업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스포츠 선행활동과 파생활동이라는 스포츠관련 산업이 있다. 어려운 점은 ‘스포츠관련 산업’에 대한 완전한 목록이 없으며 이 부문을 분석하기 위한 연구들이 서로 매우 다른 방법으로 진행되었다는 점이다(스포츠 산업에 관한 연구와 다소 유사한 방법으로 진행되었다). 이런 연구들은 수치 측정에 매우 분명한 영향을 미쳤는데 스포츠와 관련된 활동 및 경제 활동을 포함한 일자리의 수치가 측정의 정도에 따라 250개에서부터 40만 개까지로 다양하다.

체육교사	35,000명	프랑스 스포츠 관련 당국에 직접 고용된 감독	4,500명	
스포츠 용품 산업	15,000명	기타 당국 고용인(사법부, 국방부, 농림부)	500명	
스포츠 용품 거래	50,000명	지역적 공공 서비스	운영담당(기본수준의 감독)	1,500명
지역 자치단체 고용인	40,000명		강사	700명
공공 서비스	7,000명		고문	10,500명
여가용 공원	15,000명	전 체		179,700명

출처 : Vocasport report(2003), 2007년 ONMAS 개정.

추가적으로 스포츠에 관련된 산업

“스포츠” 관광 및 활동성 레저	청소년 단체 및 기업의 스포츠 활동 지원자	기타(임대 활동 및 지원)
약 100,000명	약 10,000명	약 10,000명

출처 : Vocasport report(2003), 2007년 ONMAS 개정.

활동성 레저 부문에 종사하는 인력의 규모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특히 어려운데 이 부문에 상당히 많은 약 10만 명 정도가 종사하는 것으로 추정되기 때문이다. 이는 ‘순수’ 관련 분야와 상업적 분야로 구분되는 데, 현재 여러가지 문제로 인해 스포츠 감독 분야의 종사자의 정확한 숫자를 추정하는 것이 매우 어렵다. 물론 업계나 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을 확인하는 것은 쉽다. 그러나 여기에는 독립근로 부문과(스키, 테니스, 야외운동) 특정 클럽이나 복합 구조에서 제공되는 서비스가 포함된다.

요약하면 프랑스에서 직·간접적으로 스포츠 부문에 관련된 근로자는 약 30만 명 가량이 될 것으로 본다. 이 예를 통해 스포츠 부문의 고용에 대한 구체적인 통계를 확보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알 수 있을 텐데, 이는 프랑스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스포츠 통계 자료와 관련해서 공통적으로 처하는 가장 큰 어려움일 것이다.

프랑스 스포츠 산업 고용의 주요 특징

사용자(단체)가 주로 협회의 구조를 지닌다.

- 협회 : 93%
- 유한회사 : 5% (유한책임회사)
- SASP(프로스포츠 유한회사) / SAOS (스포츠 목적의 유한회사) : 1%

전체 사용자 중 71%는 1990년 이전에 설립되었고, 31%는 설립 이전에 고용을 시작하였고, 전체 사용자의 절반은 1996년부터 고용을 시작했다. 전체 사용자의 3/4 이상이 기업의 최우선 활동 영역으로 스포츠 활동의 관리 및 감독을 꼽는다. 이들은 거의 대부분 스포츠 연맹과 관련되어 있다(90%). 회원제 연맹은 다음과 같이 구분된다.

- 61%는 올림픽 단일 종목 연합
- 13%는 올림픽 경기 종목이 아닌 단일 종목 연합
- 19%는 다중 종목 연합
- 7%는 기타(연합 및 다양한 국가 단체)

연맹과 관련이 없는 사용자들은 대부분 민간 기업이거나, 시설이나 스포츠 장비의 관리자, CDOS (올림픽위원회나 종목별 스포츠위원회), CROS(지역올림픽위원회 및 종목별 스포츠 지역위원회), 고용인 연합 등이다. 이들 기업의 3/4는 사업 부문이 한 가지이다.

이들 기업 중 41%가 1인을 고용하고 있고, 임금을 받는 직원의 8%가 여기에 속해 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10인 이상 기업은 전체의 9%에 해당하지만 여기에 60%의 근로자가 소속되어 있다. 전체 근로자의 2/3는 파트타임 근로자이다. 파트타임 근로자의 1/4 이상은 일주일에 3시간 미만 일한다. 전체 기업의 42%는 앞으로 구직을 강화할 계획이다.

■ 스포츠 산업의 사회적 파트너와 역할

사회적 파트너는 사회적 대화를 통해 존재한다. 사회적 대화에는 공익에 영향을 미치는 경제사회적 문제에 대한 사회적 파트너간(노사 대표) 협상과 조정이 포함된다. 사회적 파트너는 지역단위(기업, 행정), 지역이나 국가 단위, 특히 노사정 3자 협상의 틀 내에서의 교섭을 이끄는 역할을 맡는다.

2007년에 투표에 부쳐진 법안에 따라 (사회적 대화 근대화에 대한 2007-130 법안, 1월 31일 투표) 사회적 대화가 제도화되었다. 법안의 내용은 “근로, 고용 및 직업훈련의 개인적 및 집단적 관계에 있어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모든 개혁 프로젝트는 국가수준 및 산별 수준에서 노사 대표간 사회적 대화의 목적이 된다”는 것이다.

사회적 대화의 기구는 노사 대표간 균형을 기해 구성된 공동 위원회이다. 스포츠 분야의 사회적 대화 기구는 다음과 같다.

- 5개의 가장 유력한 노동조합(CFE-CGC, CFDT, CFTC, CGT, CGT-FO) 대표, CNES, FNASS, UNSA 대표 및 사용자 대표(CNEA, COSMOS)가 사용자 대표와 동수로 참여하는 국가협상위원회
- CPNEF 스포츠(고용 및 훈련을 위한 국가공동위원회)
- 계약 해석에 대한 위원회
- 방지, 위생, 안전 및 보건안전에 대한 위원회
- 노사 대화를 위한 공동위원회
- 프로스포츠에 대한 국가공동위원회

사회적 대화는 사측과 노동조합의 대표간 협상에서 도출된 원칙을 담은 국가 단체협약으로 작성되며, 합의문은 근로자의 노동, 근로 및 직업훈련 환경을 다루는데, 해당 산업 근로자 전체의 사회보장뿐만 아니라 근로자의 근로, 고용 및 직업훈련과 관련된 모든 환경을 내용으로 담고 있다. 합의문에는 지역적 전문적 분야에 관련된 조항을 포함해야 한다.

애니메이션과 스포츠 부문에는 2개의 단체협약이 있다.

- 애니메이션에 대한 국가 단체협약(CCNA) : 1988년 6월 28일 조인, 1989년 1월 10일 조례에

의해 확대

- 스포츠에 대한 국가 단체협약(CCNS) : 2005년 7월 13일 조인. 2006년 11월 21일 조례에 의해 확대

사회적 대화에 있어 전문협의위원회(CPC)라고 불리는 가장 오래된 기구가 증추적 역할을 수행한다. 1972년에 법령으로 설립된 CPC는 학위 및 전문적 자격요건 목록을 개발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CPC에는 관련 정부부처의 대표, 사회적 파트너 대표, 교사 등이 참석한다. 이들의 임무는 훈련 부문의 전문가들에 의해 일반적으로 조직 및 실현되고, 직업 및 부문은 인증을 통해 지원된다. 직업군별 CPC가 존재하는데 애니메이션 분과와 스포츠 분과는 1999년 설립되었다.

사회적 대화는 곧 국가, 근로자, 고용주와 교육 제공 당사자들간 관계에 있어 필수불가결한 요소로 인정받았다. 스포츠와 애니메이션 부문에서는 사회적 대화가 해당 부문 전문화의 핵심 척도이다. 스포츠와 애니메이션 부문의 거버넌스(연맹, 기업)는 이 사회적 대화를 매개로 발전한다.

■ 유럽의 스포츠 고용정책

유럽의 핵심 능력으로서의 스포츠

현재 스포츠는 유럽의 핵심 능력이 아닌 경제활동 구성 요소로서 지역사회 법률에 따른다. 그러나 2004년 10월 조인된 유럽헌법을 제정한 EU 조약은 본 조약 내 스포츠를 포함하여 EU 회원국에게 스포츠의 사회적·교육적·문화적 측면을 지원할 법률적 기초를 제공하였다(헌법 조약 Constitutional Treaty 참조).

2005년 프랑스와 네덜란드에서 조약이 거부되어 '숙고의 기간'에 들어가게 되었고, 2007년 6월 EU 지도자들은 2007년 말까지 정부간 회의(IGC)가 헌법 조약을 개정할 것을 명했다. 이들의 임무는 스포츠 부문을 EU의 핵심 능력에 포함시켜야 할 필요성에 대하여 다시 한번 확인하였다. 2006년 6월 EU 집행위원회는 유럽 수준의 당사자들이 모인 자리에서 스포츠 정책에서 EU의 역할에 대한 협의를 진행했다. 스포츠의 사회적인 역할, 경제적인 영향 및 조직에 대한 일련의 회의

를 개최했다.

협의 과정에서 ‘좋은 스포츠 거버넌스가 무엇인가’에 대한 유럽 스포츠 연맹들과 EU 집행위원회 의견이 충돌했다. 연맹들은 집행위원회가 프로축구에 너무 집중하고 아마추어 스포츠의 필요성을 무시한다고 비난했다.

주요 이슈

EU 집행위원회는 2007년 7월 11일 스포츠에 대한 백서를 채택했다. 본 백서는 EU내 “최초의 포괄적인 이니셔티브”로 아래 세 부문에서 위원회가 도입하고 지원해야 하는 조치를 제안한다.

- 스포츠의 사회적 역할 : 체육활동을 통해 공공 건강 개선, 약물사용 방지, 교육에서 스포츠 역할 강화, 자발적 활동, 사회적 참여, 인종차별 방지, 개발을 위한 도구로서 스포츠
- 스포츠의 경제적 측면 : 비교 가능한 데이터 수집, 대중스포츠 조직에 대한 재정적 지원 확보
- 스포츠 조직 : 스포츠의 독특한 성격, 자유로운 이동, 선수 교환, 선수 대리인, 소수민 보호, 부패 및 자금 세탁, 클럽의 라이선스 체계, 언론의 권리

본 제안은 또한 해당 부문에서 EU가 앞으로 취해야 할 53가지 구체적인 제안을 담은 ‘피에르 드 쿠베르탱’ 행동계획을 제안했다. 제안된 활동에는 EU 체육활동 네트워크 지원, EU내 성장과 직업을 위한 ‘리스본 어젠다’에 해당 부문의 기여도를 평가하는 연구 개시 등이 포함된다. 다른 활동으로는 부패 청산, 선수 대리인 활동 영향 평가, 축구 라이선스 체제에 대한 회의 등이 있다.

공인 자격에 대한 필요성

유럽연합이 지속적으로 확장됨에 따라 위원회는 노동자의 이동성 강화를 특히 중시하고 있다. 이와 동시에 스포츠 부문이 지속적으로 성장 및 활성화되는 가운데 사용자는 지속적으로 능력있고 자격을 갖춘 개인을 찾고 있으나 유럽 노동시장에서 이들을 찾기가 쉽지는 않다. 영국 시장에서 산업별 숙련협약(Sector Skills Agreement) 과정에서 확인된 문제가 유럽 전체적인 공통적인 문제인 것으로 파악되었다. 많은 국가의 스포츠 부문에서 직업교육훈련은 실질적으로 존재하지

않거나 매우 제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에 대한 유럽연합 차원에서의 협의와 조정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서 유럽연합의 스포츠 산업에서 인력의 이동과 고용 가능성은 매우 제한되어 있다.

상호 신뢰를 달성하고 이질성을 극복하기 위한 유럽자격방안(EQF) 도입

스포츠 부문에서 투명한 직업교육훈련 시스템을 개발하고 인정하는 데 대한 중요성은 여러 방법으로 EU 집행위원회에서 인정되었다. 우선 '스포츠'는 유럽의 새로운 유럽자격방안(EQF)을 시범적으로 도입하는 세 부문의 하나로 선정되었는데(나머지 부문은 자동차 제조 및 정보 컴퓨터 기술), 이는 스포츠 산업의 중요성과 성장을 위원회가 인식했다는 점을 나타낸다.

스포츠 자격 부문에서 직업훈련을 조율하고, 특히 스포츠 부문의 개발 및 인정에 필요한 상호 신뢰 수준을 달성하기 위한 몇 가지 참고 자료를 채택했다.

첫째 참고 자료는 블로냐 과정이다. 이를 통해 유럽 파트너들이 세 가지 수준의 대학 인증, 즉 석사 및 박사인증(LMD) 및 두 차례의 반년 과정을 채택하도록 제안했다. 이를 통해 학생들이 이동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는데, 해외에서 반년 과정을 이수해도 이를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이러한 상호 신뢰에 더불어 참고 자료를 만드는 것이 중요한데, 과정 요건이라는 관점에서 유럽 전역에 걸쳐 비교적 유사한 과정이 도입되기 때문이다. 유럽 양도가능학점(ECTS)은 유럽 전역에서 반년 과정을 통일하도록 하는 학점 제도를 도입한다.

이와 유사한 방식으로 선택된 장치인 유로패스(Europass)는 전문가를 위한 여권의 형태를 제시한다. 이 문서는 다양한 전문가 기술 및 대학 이외 수준에서의 문제로 장치를 확대한다.

둘째 과정은 2002년 코펜하겐에서 이루어진 선언의 하나로 전문훈련정책의 정의이다. 이는 근로자의 이동성을 도모하고 전문직 자격의 유사성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이 과정은 전문가 자격증으로서 스포츠 자격증의 역할에 대한 것이다. 보고서는 이러한 자격요건 및 조직이 매우 상이하다는 것에서 시작한다. 이에 앞서 첫 단계는 다양한 국가에서 전문가 자격조건의 비교 도구를 마련하는 것이다(EQF). 이러한 도구는 시험 단계의 초반에만 이용된다. 이는 비교를 위한 조건을 결정하는 문제이다. 지식, 기술, 능력은 현재 상태에서 유지된다.

■ 결론

스포츠 산업에서의 고용 규모를 추정하기가 매우 복잡하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이 부문的高용은 정확한 범주에 속해 있는 것이 아니며 아주 빠르게 성장하고 인지되고 있는 과정에 있다. 스포츠 산업의 특징을 산업 전반에 걸친 긴장관계를 통해 다시 한 번 확인해 볼 수 있다. 첫째는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아마추어와 프로 간의 긴장이다. 자발적으로 참여한 지도자들이 대부분의 연맹을 관리하며, 스포츠 산업 전문가들의 연맹 참여로 인한 전문화는 이 지도자들의 이해관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둘째는 목표가 서로 다른 연방정부의 서비스모델과 상업적 서비스모델 간의 긴장이다. 전자는 스포츠 성적과 서비스 제공이라는 목표를, 후자는 경제적인 목표를 가지고 있다. 마지막으로 필요한 전문적인 능력 측면에서 강한 스포츠 문화를 통해 체득되는 구체적이고 기술적인 능력과 관리자로서 요구되는 일반적인 능력 간에 긴장이 있다. **KLI**